

# 정 관

1989년 7월 14일 제정  
1995년 11월 1일 개정  
1996년 11월 1일 개정  
2000년 11월 10일 개정  
2002년 5월 10일 개정  
2003년 11월 12일 개정  
2004년 10월 26일 개정  
2014년 6월 19일 개정  
2017년 11월 9일 개정  
2023년 12월 21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약칭 KHNES)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소 및 신에너지, 그 응용기술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으로 회원 상호간의 지식을 증진하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수소 및 신에너지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조사 및 연구
2.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3.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4.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학술교류
5. 수소 및 신에너지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및 이

에 수반된 사업의 수행

6. 연구 장려 및 공로표창

7.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 지부, 분회, 정책연구소) 이 법인은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지부, 분회,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원

제 7 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종류)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수소 및 신에너지, 그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그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자 또는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 수소 및 신에너지, 그 관련분야에 관하여 교양은 있으나, 정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3. 학생회원 : 수소 및 신에너지, 그 관련분야에 관계있는 과정을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특별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을 지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5.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 제 9 조 (회비) ①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 ②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 시 납부하며, 연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년 연 1회 납부하고, 종신회비는 1회 납부로서 평생 회비가 면제된다.
  - ③ 특별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 ④ 이 법인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이 법인의 사업 및 학술대회에 참가
  - 2. 이 법인의 모집, 관리하는 자료 및 도서 이용
  - 3. 이 법인의 학회지에의 투고 및 학회지의 접수
  - 4. 이 법인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
  - 5. 총회에의 출석. 다만, 의결권은 특별회원, 및 정회원에 한하며, 특별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 ② 특별회원의 권리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1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자진 탈퇴하였을 때
- 2. 제명되었을 때
- 3. 사망하였을 때
- 4.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 12 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이 법인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한 경우
- 3. 이 법인에 대한 의무를 대만히 한 경우

### 제3장 임원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9인
4. 이사 11인(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연임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석부회장도 자동 연임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무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해당 직무를 역임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회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보선도 이에 준한다.

③ 수석부회장이 임기 중 결원이 되면 본조 제 2항의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7 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4장 총회

제 19 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5. 시행규칙의 승인
6. 이 법인의 해산
7. 기타 중요사항

제 21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 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2/3 이상 의결 또는 정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2 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정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는 부결 한다.

## 제5장 이사회

제 23 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  
성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4 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25 조 (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③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또는 통지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2/3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았을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8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 29 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기부 또는 부조금
5. 기타의 수입

제 30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1 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2 조 (예산 외의 채무 부담) 예산 외의 채권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 33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청산) ① 해산할 경우 본 법인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② 본 법인의 청산 감사는 현재 감사로 한다.

③ 본 법인의 청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35 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5조 3항에 의한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 신문에 공고 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및 재산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 38 조 (임원의 임기 시작 및 종료) 임원의 임기는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민법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1. 이 정관(개정)은 1995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정관(개정)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정관(개정)은 2002년 5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이 정관(개정)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정관(개정)은 2014년 6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정관(개정)은 2017년 11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이 정관(개정)은 2024년 1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